

**자산보관 · 관리보고서**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 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0065/02-6955-1004

**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**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 삼성KODEX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
- 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증권집합투자기구(주식-파생형)
- 다. 보관 · 관리기간: 2022.01.01 - 2022.12.31
- 라. 집합투자업자: 삼성자산운용주
- 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교보증권, 신한금융투자, 한국투자증권, 대신증권, 미래에셋증권, 유진투자증권, 메리츠증권, NH투자증권, KB증권, 한화투자증권, 유안타증권, SK증권, 삼성증권, DB금융투자, KB증권(구케이비), 씨엘에스에이코리아증권, 크레디트스위스증권, 골드만삭스증권, 하이투자증권, 키움증권, 리딩투자증권, 하나금융투자, 비엔케이투자증권, 이베스트투자증권

**2.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**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22.04.14	설정단위 변경 제22조(설정단위)	①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200,000 좌로 한다.	①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50,000 좌로 한다.
2022.10.13	투자대상자산 추가(파생결합증권, 10% 이하) 제35조(투자한도)	<신 설>	6. 파생결합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.

\* 자세한 변경사항은 <http://dart.fss.or.kr> 을 통해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.

**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**

- 해당사항 없음

**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**

- 해당사항 없음

**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**

- 해당사항 없음

**6. 회계감사인의 선임 · 해임에 관한 사항**

변경전				변경일	변경후			
회계감사인명	계약기간	감사보수	계약방법		회계감사인명	계약기간	감사보수	계약방법
대주회계법인	1년	385만원	서면계약	-	-	-	-	-

\*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, 위에 명기된 회계감사인보수 금액은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지급되는 보수 금액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.

**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**

-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  - 부합함
-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  - 적정함
-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  - 해당사항 없음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  - 공정함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  - 적정함
-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탁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  - 해당사항 없음
-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달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  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· 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-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
  - 해당사항 없음

**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**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